

2026년 제4회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인천광역시 송도동 22-15번지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6. 7. 21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김기범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22-15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1,819.20 m²	용도지역(지구,구역) 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894.03m²	건폐율	49.14%	층수 지상 : 4층
	주 용 도	제2종근린생활시설 (일반음식점)	구 조	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	19.10m	용적률	131.70%	연면적 합계 2,433.76m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공통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인허가 진행할 것 ○ 옥탑부 태양광 패널은 4층 지붕(잔여공간)으로 최대한 재배치하고 옥탑부 잔여 패널도 한쪽으로 배치하기 바람 ○ 옥상조경부분과 태양관 패널 설치 구간을 조정하여 경관 개선 ○ 소화펌프, 소화수조는 지상4층에 설치가 되도록 실시도면에 반영할 것. ○ 사용승인 이후에라도 배기덕트 등 미관을 해치는 설비시설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○ 필로티 마감재는 불연 또는 준불연재 이상을 적용할 것. ○ 지상 주차장의 좌측 9대 자주식 주차부분을 확장형 주차로 확보 (조경부분 문제가 없을 경우) ○ 건축물의 2층, 3층 주방예상 부분에 덕트 설치를 지양하고, 필요시 최대한 경관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할 것. ○ 소방관련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스프링클러 설비로 설치할 것. 끝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